

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
제출자 : 파주시장

☐ 제안이유

-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여 보다 건전하고 활기찬 문화예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시민회관장의 업무관장중 단서조항을 신설함(제5조 제2항)

☐ 개정조례(안) : 별 첨

☐ 신구조문대비표 : 별 첨

☐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☐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4조 제1호 및 제2호·제5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문화공보담당관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”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<u>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</u> 제5조 (관장) ① (생 략)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u>(신설)</u>	<u>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</u> 제5조 (관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, 다만 제4조 제1호 및 제2호·제5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<u>문화공보담당관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</u>	건전한 문화예술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.